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중점데이터 지정 및 관리 등〉
■ 윤후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034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국가중점데이터의 지정 및 관리	4
2.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제공기반 구축	12
3. 표준화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에 3개월 이내 조치의무 부여	17
4. 공공데이터 교육·훈련의 구체화	2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후덕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10.
3. 회부연월일 : 2025. 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및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가중점데이터에 관한 사항 및 새로운 프로그램 혹은 서비스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공공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중점데이터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국가중점데이터의 제공방식을 가공 및 정비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중점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 다. 공공데이터 표준화 요구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시정조치의 시한을 3개월 이내로 하며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유와 계획을 밝히도록 함(안 제23조).
- 라. 국가중점데이터와 그 밖의 중요한 공공데이터를 일정한 형태로 제공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과 형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4조).
- 마.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5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국가중점데이터의 지정 및 관리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중점데이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중점데이터를 적절한 방식으로 가공·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9조의2(국가중점데이터의 지정 및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중 제공의 효과성·시급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공공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점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중점데이터를 적절한 방식으로 가공하거나 제공 형태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중점데이터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국가중점데이터의 지정·관리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국가중점데이터 관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기업 등의 수요를 중심으로 개방·활용 시 국가적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고가치·고수요 데이터를 높은 분야를 선정하고 민간에서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정제, 가공하여 개방된 양질의 대용량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중점데이터’를 선정하고 있고, 현행법 제21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¹⁾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국가중점데이터는 전략적 중요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수의 분야를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이기보다는 매년 국민·기업 등 수요조사를 통해

1)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개요】

□ 개 요

- ‘13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범정부 공공데이터 종합관리 시스템인 **공공데이터포털 구축·운영**

□ 주요 기능

- **(개방)** 전 공공기관(약 800여개)이 보유하는 데이터(10만3천여개) 개방
- **(신청)**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 **(검색)** 국가데이터맵을 통해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검색 및 시각화된 연관데이터 자료를 통해 개방여부를 쉽게 확인 가능한 서비스 제공
- **(활용)**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공데이터 품질 및 통계관리
 - 제공데이터 현행화 및 품질 정비(오탈자, 데드링크 등), 오픈API 서비스 상태 모니터링 등
 -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32백여개) 및 활용 기업 인터뷰 기사 제공 등

□ 주요 성과

-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데이터 개방 및 활용 건수 지속 증가

자료: 행정안전부

후보과제를 발굴하고 타당성 심의위원회²⁾에서 개방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2015년도부터 시작되었음.

국가중점데이터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33개 분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3개 분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72개 분야, 2023년 30개 분야, 2024년 19개 분야 등 총 217개 분야가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되었고,³⁾ 2025년에는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다부처 협력과제, 리걸테크 데이터 등 15개 분야가 선정·개방될 예정임.

【202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후보과제】

분류체계		개방기관	후보과제
행정	행정지원	행정안전부	전국 업종별 인허가 정보 및 생활 편의정보
		법제처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기관 재결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정보
	모빌리티	한국교통안전공단	비수도권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 정보
	교육	육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영유아·아동·청소년 패널데이터

2) 국가중점데이터 타당성 심의위원회의 법령상 근거는 없으나, 후보과제의 국가중점데이터로서의 부합 여부, 데이터 개방이 시급하고 중요한지, 많은 활용이 예상되는지, 활용 서비스와 데이터와의 상호 연관성이 높은지 등을 검토하여 개방과제를 선정하고 있음.

3) 【국가중점데이터 주요 개방 현황】

법률	보건의료	교통	부동산
특별행정심판· 헌법재판소 판례, 중앙부처 법령유권해석	의료영상, 코로나 감염병 데이터, 감염병 진료통계	자율주행 딥러닝 학습정보, 서울지하철 실시간 정보	부동산종합정보, 부동산거래관리정보
과학기술	고용	복지	안전
해양공간정보, 대용량 기상데이터, 식의약 위해정보	고용보험정보, 일자리종합정보, 공공기관 채용정보	IoT기반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현황, 교통약자 편의시설	119화재정보, 홍수위험지도, 해양안전정보

자료 : 행정안전부

분류체계		개방기관	후보과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운영 데이터
생활	출산·육아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데이터
	안전	소방청	건물 화재 예방 및 대응시설 정보
		국토안전관리원	특수고 통합관리계측 데이터
	날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실시간 일사량 및 홍반자외선예측지수
경제	농축수산	국립농업과학원	스마트팜 연구기술 정보
	공급망	한국서부발전	신재생에너지 및 발전소 운영 정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확대 제공
		울산항만공사	울산 항만 실시간 선박 운항정보 및 항만시설 운영정보
IT·과학	과학기술	국립해양조사원	해양 환경 정보 및 연구 기초 데이터

자료 : 행정안전부

이러한 국가중점데이터 정책은 현행법 제24조⁴⁾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으나,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진 목적, 선정 절차 및 개방 분야 등에서 공공데이터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정비 및 제공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 vs 국가중점데이터】

구분	공공데이터	국가중점데이터
근거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추진
목적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 및 민간에서의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 창출 지원	개방·활용 시 국가 차원의 파급효과가 높은 고가치·고수요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 데이터 신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등 *품질개선을 통한 고품질 데이터 제공
제공 절차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 의무(공공기관장) *공공데이터목록등록관리시스템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 선정(전략위원회 심의의결) ↓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공공기관장) ↓ 공공데이터 이용(국민, 기업 등)	수요조사(국민, 기업 등) ↓ 타당성 심의위원회 검토(전문위원) ↓ 후보과제 확정 ↓ 사업추진(조달을 통해 업체 선정/ NIA·주관기관) ↓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주관기관) ↓ 국가중점데이터 이용(국민, 기업 등)
제공 실적	10만 3천여건('13~'25)	217건('15~'24)
개방 현황	공공행정, 문화관광, 산업고용, 교통물류, 환경기상 등 분야 * 가장 많이 활용되는 데이터는 연속지적도, 환율 정보, 대기오염정보, 시군구 정보, 단기예보, 공휴일 등 정보, 자동차 종합정보, 교통CCTV 등	법률(판례 등), 보건의료(의료영상, 코로나 데이터 등), 교통(자율주행 딥러닝학습정보 등), 부동산(거래관리정보 등), 과학기술(대용량기상데이터 등), 고용(고용보험정보 등), 복지(IoT기반 독거노인 응급안전 등), 안전(홍수위험지도 등)
제공 형태	파일(확장자 csv, XML 등 오픈포맷*) 또는 오픈API** * 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식 **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외부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사용자가 바로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소프트웨어 ※ 최근 국가중점데이터의 오픈API 제공 확대 노력	

자료 : 행정안전부

이에 개정안은 국가중점데이터 정책의 추진체계와 지원근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추진체계 구축 및 지원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은 “국가중점데이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개정안 조의 제목 및 조문 등에서 “공공데이터”와 별개로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국가중점데이터 지정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중점데이터는 실제 국민, 기업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후보군이 선정·확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국가중점데이터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과제선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더하여 현장에서는 공공기관별로 공공데이터 개방수요 및 이용현황 파악을 위해 매년 수요조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바,⁵⁾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 제공 목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요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상청·산림청특허청 등 49개 기관, 2024년 법무부·외교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72개 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규 수요 및 만족도 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남.

셋째, 국가중점데이터 지정 후보군을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안 제19조의2제1항은 국가중점데이터를 법 제19조제1항⁶⁾에 따라 전략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공공데이터 목록 중에서 지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국가중점데이터는 국민·기업 등 수요기반의 활용성 및 이용성이 높은 데이터로 후보과제가 국민·기업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반면,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를 생성·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후보과제를 선정하고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국민 제공여부가 결정되는 등 절차상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중점데이터 후보 대상을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에서 “제17조⁷⁾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 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① 전략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 가운데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목록을 심의·의결한다.
- 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제공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넷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중점데이터 관련 공공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 범위가 구체적 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안 제19조의2제3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중점데이터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지원이 가능한지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현장에서 적용 대상에 대한 해석 등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국가중점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 범위를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안 제19조의2제3항을 수용할 경우, 국가중점데이터 관리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도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기보다는 “정부”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참고로, 현행법 제24조제3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정비 및 제공방안 마련에 필요한 지원 주체를 “정부”로 규정하고 있음.

2.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제공기반 구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중점데이터의 품질을 진단·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안 제22조제3항),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국가중점데이터 및 이용수요가 많고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를 이용자의 이용·활용에 맞게 일정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24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 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u>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u>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19조의2에 따른 국가중점데이터와 그 밖에 이용수요가 많고 사회적----- ----- -----.
제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u><신설></u>	제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른 국가중점데이터와 그 밖에

③ (생략) <u><신설></u>	<u>이용수요가 많고 사회적·경제적 과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의 경 우 이용자가 이를 이용·활용하 여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이나 서 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일정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3항에 해당하는 공공데이터 의 기준과 구체적인 제공 형태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현행법 제22조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수준 확
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품질진단 및 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는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및 완전성을 확보할 수

8)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유효성, 일관성, 상호연계성 등에 대한 진단·평가를
통해 민간에 개방하였을 때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고 그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을 말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4조(품질관리 평가 및 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평가를 위해 평가대상, 추진체계, 절차 및 기간,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포함한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공공데이터의
정확성, 유효성, 일관성 등 품질관리 수준진단에 적용할 기준과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2조(정의) 이 지
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2. “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목표 설정, 품질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있게 함으로써 민간이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시장을 예측하는 데 정확도 및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생산·저장된 방대한 데이터를 일정한 형식으로 가공하는 표준화를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의 데이터 연계성 확보와 아울러 민간에서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하고 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은 국가중점데이터에 대해서도 품질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중점데이터와 그 밖에 이용수요가 많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이하 “국가중점데이터등”)를 일정한 형식에 맞춰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공공데이터의 접근성 및 활용성을 향상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24조제5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기준 및 제공형태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체계상 적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어 보임.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방안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제7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고, 기본계획은 현행법 제6조⁹⁾에 따

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전략위원회의 기능) ①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른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이므로,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안 제24조제3항은 현행법 제24조제2항의 내용과 중복 규정의 우려가 있어 보임.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국가중점데이터등을 이용자의 수요에 맞춰 추출, 결합, 익명처리 등 형태로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 제24조제2항의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에 관한 내용과 연계되므로 통합·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더하여 공공데이터의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생성, 변형 또는 가공·요약·발체 제공 의무가 없다는 점(현행법 제26조제3항¹⁰⁾)을 고려할 때, 안 제24조제3항 중 “그 밖에 이용수요가 많고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를 제공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공공데이터의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 8. (생략)

② (생략)

- 1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③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체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연계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11) 조은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77호, 2024.08.23. 발의)

3. 표준화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에 3개월 이내 조치의무 부여

개정안은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조사 및 시정요구를 구체화하여 시정요구대상 공공기관에서 국가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들을 제외하고, 시정조치의 이행 기한을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하면서 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향후 조치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① -----.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① (현행과 같음)
1.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기술	
2.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분류체계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수하여야 <u>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u> <u>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u> <u><신설></u>	② ----- ----- <u>한다.</u> <u><후단 삭제></u>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

<신 설>	관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공공데이터 표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조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

공공데이터 표준은 다수의 공공기관이 민간에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성 및 개방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를 동일한 형식과 항목으로 표준화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공통적으로 빈번히 사용하는 용어를 범정부 공통표준용어로 정하여 2020년 535개가 처음 제정된 이후 2024년까지 총 9,027개가 제정되었고,¹²⁾

민간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 중 다수 기관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개방 중인 데이터를 제공표준으로 정하여 2014년 2종이 처음 제정된 이후 2024년까지 총 250종이 제정되어¹³⁾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12) 공통표준용어(누적): (2020년) 535개 → (2022년) 1,686개 → (2023년) 5,386개 → (2024년) 9,027개

13) 제공표준(누적): (2014년) 2종 → (2022년) 169종 → (2023년) 203종 → (2024년) 250종

통해 제공되고 있음.

현행법 제23조제2항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데이터의 표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데이터 표준 이행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 시행령 제18조14)에서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규정한 행정입법임.

이에 안 제23조제4항은 이 법 시행령상 해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시정조치 이행시기 및 절차 등 공공기관의 시정요구 이행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또한, 안 제23조제3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시정요구 대상에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감독권을 가진 상급 행정관청이나 감사기관이 아닌 공공데이터 개방·제공제도를 운영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4개 헌법기관에 대하여

1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공공데이터 표준 준수 관련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표준 준수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시정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점, 현행법 제9조15)에서도 행정안전부장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대상 공공기관에 4개 헌법기관을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1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조성, 제공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4. 공공데이터 교육·훈련의 구체화

개정안은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 목적에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문화 조성을 포함하고, 교육 내용에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공익이나 국민의 권익을 해치는 공공데이터의 오용·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음(안 제2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5조(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 관리·제공과 관련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u>건전한 공공데이터 이용문화를 조성하고 공익이나 국민의 권익을 해치는 공공데이터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u> <신 설> <신 설>	제25조(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u>공공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공공데이터 이용문화를 조성하기</u>-----<u>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u>----- --. 1. <u>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u> 2. <u>공익이나 국민의 권익을 해치는 공공데이터의 오용·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u>

<u><신 설></u> ③ 그 밖에 공공데이터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¹⁶⁾으로 정한다.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이용을 <u>활성화하고 건전한 공공데이터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③ (현행과 같음)
--	---

개정안은 공공데이터 이용자들을 위한 교육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교육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데이터 환경에 맞춰 탄력적·능동적으로 이용자를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25조제2항제3호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이용문화 조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체계상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공공데이터의 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은 현행법 제7조제2항17)에 따

1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공공데이터 관리·제공 관련 교육·훈련 실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관리·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공공데이터 관리·제공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현행법 제25조 제3항은 그 밖에 공공데이터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둘째, 현행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교육과 관련해서는 별도 현장 교육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정비가 필요해 보임.

현재 현행법 제2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DB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정책 및 품질관리, 품질진단의 이해, 진단 도구(DQ)를 활용한 프로파일링 및 오류개선 등이 전부임.¹⁸⁾

반면, 이용자 대상 교육과정은 별도로 개설된 바 없고, 온라인(공공

1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②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8) 참고로,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데이터 교육실적을 살펴보면, 참여인원은 2024년 기준 991명으로 전년 대비 147명(13.0%↓) 감소함.

【최근 3년간 공공데이터 담당자 교육 실적】

구분	일자	장소	대상	인원(명)
'22	'22.6.7~6.17	서울, 대전, 세종, 광주, 전주, 부산, 대구	품질관리 및 DB 운영 담당자	723
'23	'23.5.30~ 6.9	서울, 대전, 세종, 광주, 부산, 대구	품질관리 및 DB 운영 담당자	1,138
'24	'24.6.11~ 6.20	서울, 대전, 세종, 광주, 대구, 부산	품질관리 및 DB 운영 담당자	991

자료 : 행정안전부

데이터포털)에 ‘공공데이터 찾기’, ‘공공데이터 활용 방법’ 등(2024년 기준 7종) 콘텐츠가 게시될 뿐인데, 해당 콘텐츠가 이용자에게 얼마나 유용하고 활용성이 있는지, 이용수요 등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처럼 공공데이터 이용자 대상 교육의 필요성이 미흡해 보이는 상황이라면 현실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공데이터 관련 대국민 인식 개선 및 홍보 등 이용자 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를 통해 추진하는 공공기관별 공공데이터 운영 담당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겠음.¹⁹⁾

문 의 처

02)6788-5339

19) 현행법(제13조제2항제14호)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가 제2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①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이하 "활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설치·운영한다.

② 활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4. 제2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